



-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1. 1.



박왕규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박 왕 규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달서구 평생 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평생학습관 사용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기능, 이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관리,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 사용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평생학습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동(洞)별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끝으로, 안 제14조에서는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1년 1월 7일부터 2021년 1월 19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00821001
------------	----------

발의일자: 2021. 1. 7.

발의자: 박왕규, 박정환, 김화덕, 안대국,  
홍복조, 김태형, 정창근

### 1. 제안이유

달서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평생학습관 설치, 기능, 이용대상(안 제3조~안 제5조)
- 다.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안 제6조)
- 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안 제8조)
- 마.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반환(안 제10조~안 제12조)
- 바. 동별 평생학습센터 운영(안 제13조)
- 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안 제14조)

###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비용추계서: 비대상

- 가. 사유: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 나. 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5.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제21조

## 대구광역시 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학습관의 사용”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지원
6.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7.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8.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9.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이나 직장을 둔 사람
3. 구 관내의 단체 또는 기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기관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문화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할 경우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 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시설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평생학습관의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평생학습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2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또는 수강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 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
4. 사용 또는 수강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3 기준을 따른다.

제13조(동별 평생학습센터)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 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별 지역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3.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4. 지역 평생학습 상담
5.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사업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료 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 등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평생교육실무협의회에서 관련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제10조 관련)

구 분	기 준	사용료 (수강료)	비 고
1. 시설사용			
○강 당	1회	2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 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한다.</li> <li>○ 야간(18시 이후)은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한다.</li> <li>○ 1회는 3시간 이내로 하며 3시간 초과인 경우 시간당 1만원 추가한다.</li> </ul>
○강의실	1회	10,000원	
2. 수강료			
○기본 강좌	1강좌당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재비 및 재료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li> </ul>
○특별 강좌	1강좌당	30,000원 이하	

※ 사용료는 시설의 사용 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2]

사용료 등의 감면(제11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 고
<b>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등</b>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전액면제	
타 기관이나 단체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을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전액면제	
<b>수강료(교재비 및 재료비 미포함) 등</b>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따른 참전유공자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따른 의사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사상자 가족	5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	30%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30%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30%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30%	

[별표 3]

###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12조 관련)

가. 사용료

구 분	반환사유발생일	반 환 금 액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강의를 할 수 없거나, 강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일할 (日割)계산한 금액
제12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예정일 전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나. 수강료

구 分	반환사유발생일	반 환 금 액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강의를 할 수 없거나, 강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日割)계산한 금액
제12조제1항 제4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강의 시작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강의 시작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강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강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한 금액) 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강의시간은 강의기간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관계법령】

### □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